외국환거래약정서 개정(안)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외국환거래약정서	외국환거래약정서	
년 월 일	년 월 일	금감원 약관변경 권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	주식회사 하나은행 앞	고에 의거 개정함
본 인 (인)	본 인 (인)	
주 소	주 소	
본인은 ~ 확약합니다 . (중간 기재생략) 	본인은 ~ 확약합니다 . (현행과 동일) 	
THE TELES	ᅰᄼᆛᆉ	
제 1 장 공통사항	제 1 장 공통사항	
제 1 조~ 제 7조 (기재생략)	제 1 조~ 제 7조 (현행과 동일)	
제 2 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	제 2 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	
. 3 . 2	. 0	
제 8 조~ 제 9조 (기재생략)	제 8 조~ 제 9조 (현행과 동일)	
제 10조 매입대금상환	제 10조 매입대금상환	
① (기재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	
1. ~2. (기재생략)	1. ~2. (현행과 동일)	
3.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	3 (②항 1호로 이동)	
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		
4.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	4.(②항 2호로 이동)	
5. 본인이 화환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매입대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	5.(삭제)	
화환어음		
6.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	6 (②항 3호로 이동)	
지 상환되지 아니하여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관련 규정		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		
여 "회수의문" 또는 "추정 손실"로 분류되어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		
우의 그 원화금액	②(신설)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에 대해 은행은 유선통화,전자우편,서	
	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, 이에 따라 본인은 화환어음 매입	
	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.	
	1.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	
	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	
	2.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	
	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	
	지 상환되지 아니하여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관련 규정	
	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	
	여 "회수의문" 또는 "추정 손실"로 분류되어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	
	우의 그 원화금액	
②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(은행의 서면독	③(번호 변경 및 내용 수정)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	
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	및 제4항(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	
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	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	
간이 지나면 모든 화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	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든 화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	
	곧 갚기로 합니다.	
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	④ (번호 변경 및 내용 수정)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환가료 징	
환일 전날 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다	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 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	
만,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	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	
손해배상금을 기산합니다.	우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기산합니다.	
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 신청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	⑤ (번호 변경 및 내용 수정)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 신청	
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, 은행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	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, 은행	

현 행	개 정(안)	비고	
부수하는 손해배상금, 수수료,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	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, 수수료, 비용 등을 변제할 때		
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.	까지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.		
제 11조 (기재생략)	제 11조 (현행과 동일)		
제3장~ 제6장 (기재생략)	제3장~ 제6장 (기재생략)		